

畜產業協同組合法(上)

(제 1 조 ~ 제 64 조 까지 전문개재)

양계인의 소망이 생산물의 가격안정에 있고, 제도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협동조합도 생각해 보아 왔다.

81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협동조합법을 2회에 나누어 전문 개재코자 한다.

앞으로 축종별 전문조합인 양계협동조합도 탄생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는대로 이도 본지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畜協中央會)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양축가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증식·채란·착유등을 포함한 광의의 축산경영업을 말한다.
2. “양축가”라 함은 스스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家口主 개인을 말한다.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축산업과 양축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조(명칭 등) ①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과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을, 업종조합은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을,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말한다.

④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4 조(法人格)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 5 조(住所)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 6 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정치에의 관여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겸직금지 등) ①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선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 (정부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 6 조·제 8 조·제 10 조 내지 제 13 조·제 15 조·제 16 조·제 17 조의 2 제 20 조 내지 제 22 조·제 24 조 내지 제 26 조·제 27 조 제 4 호·제 8 호·제 10 호·제 30 조 제 5 호 제 34 조·제 35 조·제 38 조 내지 제 41 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 155 조 내지 제 16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창고업법·농업창고업법 제 18 조·무역거래법 제 3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제 1 절 목적과 설립

제 12 조 (목적)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 조 (구역) ① 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같은 구역내에서는 2개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은 조합의 구역변경이 지역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양축가(발기인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 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의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에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 발기인중 제 1 항의 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출자 1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

8.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
 9. 적립금의 금액과 적립방법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
 11. 회계년도와 회계
 12. 사업의 종류와 집。
 13. 총회 기타 의결기관
 14. 임원의 정수와 임면
 15. 공고의 방법
 16. 부칙으로 정한 사항
- 가.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나.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수량·가액과 출자자의 주소·성명 및 이에 대한 환가출자좌수 및 환매특약조건
- 다.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액과 양도인의 주소·성명

제16조(사무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납입기일내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성립과 인가의 취소) ① 조합은 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당해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 절 조합원과 출자

제1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은 그 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둔 양축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조합원

으로 한다.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내에 주소 또는 주사업장을 둔 양축가가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단체 또는 법인을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座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座의 금액은 均一하여야 하며, 1座의 금액 및 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相計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1條(回轉出資) 조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이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락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의한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3조(경비등의 부과와 징수)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과태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과태금·사용료·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4조(의결권·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가입) ①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불일수 없다.

② 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없이 출자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

⑤ 제 1 항의 규정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7조(탈퇴) ① 조합원은 60일 전에 예고하고 회계년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1.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禁治產宣告를 받은 때

③ 제 2 항 제 1 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와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정판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② 제 1 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시 10일전 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자분환급 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년도가 경과한 후 정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청구권은 탈퇴년도 말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조합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탈퇴조합의 손실액 부담)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9조 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결취소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정판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 관

제32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

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6. 결산보고서의 승인
7.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요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 2 항의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가 제 3 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 항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①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② 총회소집통지는 개회 7일전에 회의목적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6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3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7조(의결권의 제한) ① 총회에서는 제3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진급을 요하고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그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3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총대회) ①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총대의 정수는 10인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③ 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날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

④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총대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5. 간부직원의 任免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업무규정의 제정 · 개폐를 포함한다)
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0.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임원의 정수와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3인 이상 7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조합장 · 이사 · 감사는 그 조합의 조합원총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선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 · 비밀투표로 행한다.
- ④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42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조합장이 미리 정하는 순위에 따라 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闕位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한다.
-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 · 총대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 · 이사 ·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

제45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와 破產者 또는 公民權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罷免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중에 제 1항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에는 당해임원은 자연해임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 韻應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지 못한다.

제47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조합장은 그 조합(업종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監事 · 理事 또는 職員을 겸직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그 조합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직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 2 항과 같다.

제49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조합은 정관·총회 의사록·조합원명부 및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 1 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5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간부직원)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서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다.

②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전무는 조합의 업무를 統轄處理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당하고 전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전무가 결위된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 1 항의 간부직원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민법·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제63조와 상법 제382조 제 2 항·제386조 제 1 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11조 제 1 항 및 제 3 항·제12조·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내지 제2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 4 절 사 업

제53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축산에 관한 기술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 또는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에 관한 시설의 설치
2. 축산계에 관한 지도와 육성
3. 부리후생사업
4.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친료
5. 구매사업(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과 공급)
6. 판매사업(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운반·보관·처리·가공·검사와 판매)
7. 보판사업
8. 이용·운송사업
9.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10. 축산물작업장의 설치·운영
11.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12.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적금의 수입
 -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13.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및 가축공제
14. 다른 조합(업종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
15.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
16.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7. 정부보조사업
18.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19. 단체협약의 체결
20. 제 1호 내지 제19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1. 기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 조합은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제12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이 제 1 항 제16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수개의 조합이 공동으로 제 1 항 제 6 호 및 제 9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제 1 항 제1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4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업종조합을 포함한다)과 그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55조(다른 기업에의 출자) ① 조합은 제5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절 회 계

제56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주무부장관이, 계정파목과 장부조직은 중앙회장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0일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여유자금의 예치)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0조(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과 이월금) ①

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53조 제 1 항 제 1 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회계년도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사업준비금·법정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행하고 잔여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한다.

제62조(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减資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受贈益

3. 자산재평가차익

4. 합병차익

제63조(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다음호로 계속)